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관리위원회 해외연수 출장복명서

I. 해외연수 개요

1. 목적

- 선진국의 예금자보호제도, 금융감독시스템 등의 연수를 통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도모

2. 개요

□ 기간 : '10.6.14(월) ~ 6.22(화)

□ 인원 : 9명(기금관리위원 6명, 직원 3명)

< 연수단 인원 현황 >

구 분		소 속	직 명	성 명
연수단장	위원장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	서 인 석
연수단원	위원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사 무 관	박 중 신
		한국산업은행	선임연구위원	정 봉 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황 의 식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손 재 범
		한국낙농육우협회	부 회 장	심 동 섭
	조합구조개선지원부		부 장	김 정 식
	해외협력국		팀 장	조 시 형
	조합구조개선지원부		검 사 역	류 종 렬
계	-		-	9명

3. 주요 연수내용

○ 방문국가 및 연수기관

방문국가	연수기관	주요 연수내용
스웨덴	국가채무청 (National Debt Office)	○ 국가채무청의 조직 ○ 은행지원 및 재정관리 ○ 예금보험제도 운영
노르웨이	금융감독청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 금융감독청의 조직 및 기능 ○ 금융감독 및 절차 ○ 은행 및 보험의 위기관리

* 핀란드 협동조합 금융그룹 및 덴마크 낙농농협 등에 대한 연수를 함께 추진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음

□ 스웨덴 국가채무청

- 연수일시 : '10.6.15(화) 09:30~12:30
- 조직 및 인원 : 1위원회 5부 6과(재무부 소속), 150명
- 위원회 : 8명의 위원과 2명의 직원 대표로 구성
- 주요내용
 - 전문 공공기관을 위한 통합 은행서비스 지원시스템 확립
 - 은행에 대한 보증 확대 등 정부지원 강화
 - 예금보험료는 금융기관의 총자본에 따라 차등 부과

□ 노르웨이 금융감독청

- 연수일시 : '10.6.18(금) 09:30~12:00
- 조직 및 인원 : 1위원회 4부, 255명
- 위원회 : 5명의 위원으로 구성(행정 관련 2명 직원대표 참석)

○ 주요내용

- 내부조직을 감독기능 원리에 따라 구분하고 리스크감독 원리에 근거하여 검사
- 위원회와 금융감독청 간의 의사교류 활발
- 현장검사를 중요시하고 검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 은행의 위기관리를 위해 감독 관련기관과 협력 강화

4. 연수일정

월일	지명	시간	진행내용
6.14(월)	인천 프랑크푸르트 스웨덴스톡홀름	13:15 17:45 19:50 21:50	인천 →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도착/경유 프랑크푸르트 → 스톡홀름 스톡홀름 도착
6.15(화)	스톡홀름		스웨덴 채무위원회 연수
6.16(수)	스톡홀름		스웨덴 체류
6.17(목)	스톡홀름 노르웨이오슬로		오슬로로 이동
6.18(금)	오슬로		노르웨이 금융감독청 연수
6.19(토)	오슬로		노르웨이 체류
6.20(일)	오슬로 덴마크코펜하겐		덴마크로 이동
6.21(월)	코펜하겐 프랑크푸르트	14:15 15:45 19:45	코펜하겐 →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도착/경유 프랑크푸르트 → 인천
6.22(화)	인천	13:05	인천공항 도착

II. 스웨덴 국가채무청(National Debt Office) 연수

1. 연수개요

○ 연수일자 : '10. 6. 15(화)

○ 주요내용

설명자	시간	주요내용
채무관리국장 Thomas Olofsson	09:30 ~ 10:30	국가채무청의 조직
은행지원부장 Daniel Barr	10:40 ~ 11:30	은행지원, 재정관리
보증공채부 Helena Persson	11:40 ~ 12:30	예금보험제도 운영

2. 스웨덴의 금융기관 관련 부서

□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 스웨덴의 중앙정부 자체는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하부조직으로 많은 공공기관을 두고 있음
 - 정부는 소수의 공무원으로 조직
 - 공공기관은 전문기능별로 약 200개로 구분되고 몇 백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음

□ 금융기관 관련 부서는 재무부, 중앙은행, 채무청, 감사부가 있음

○ 중앙은행, 채무청, 감사부는 상호독립적임

- 대출, 보증, 은행지원을 담당하고 통화발행 등 금융시장을 조정함

○ 재무부

- 300 ~ 400명으로 구성
- 보증대출의 총 책임기관
- 자체 발의한 법률로 중앙은행, 채무청, 감사부를 조정
- 금융정책을 독립적으로 결정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도 있음
- 재무부장관은 채무청, 감사부에 직접 지시하지는 못하지만 하부조직에 전달하도록 할 수 있음

○ 중앙은행

- 국회에서 담당하며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의거 운영
- 가격안정 및 금융안정 담당

○ 감사부

- 재무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은행을 감시 감독함

3. 국가채무청의 조직 및 기능

□ 조직 : 1위원회, 5부 6과 (재무부 소속)

○ 위원장, 채무청장, 전무이사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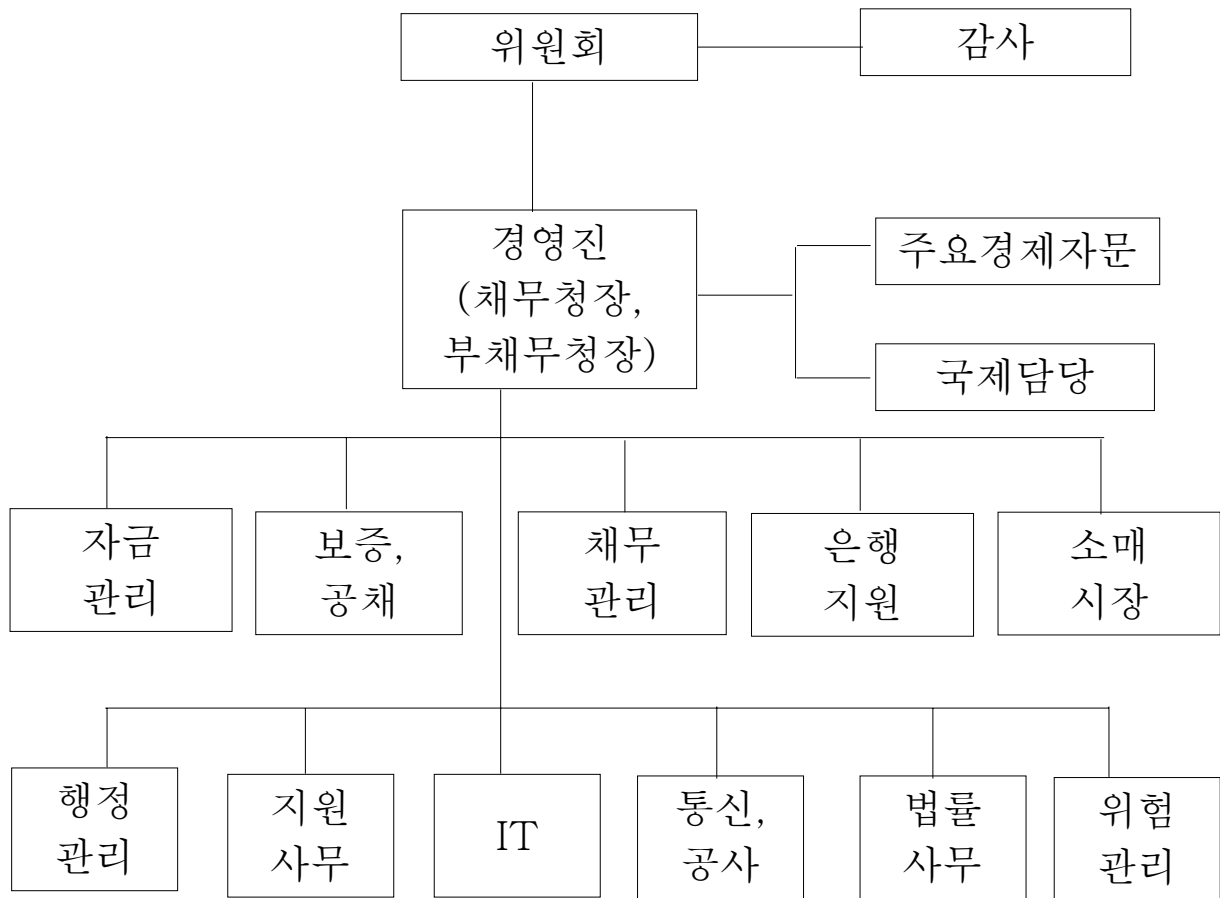
- 위원회와 채무청장은 정부가 임명

○ 위원회(The Board of the Debt Office)

- 구성 : 8명의 위원과 2명의 직원 대표로 구성
- * 채무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은 별도 선임)

□ 인원 : 1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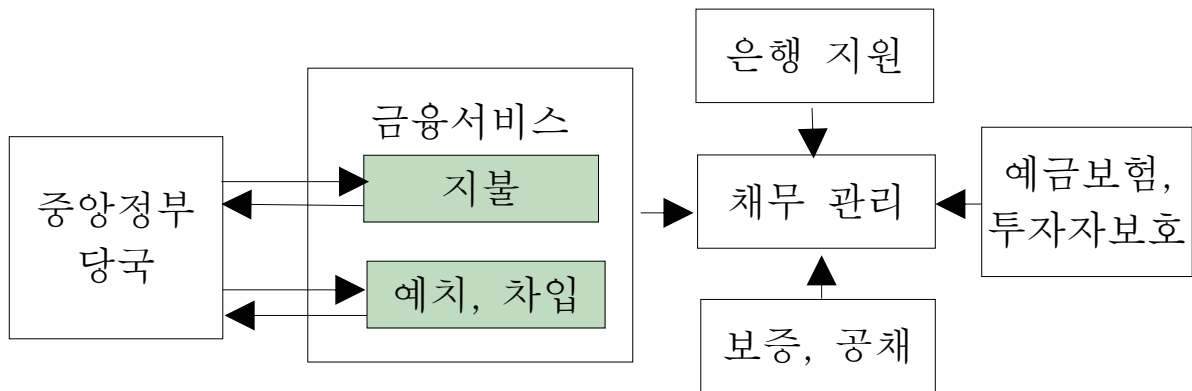
< 국가채무청 조직도 >



□ 기능 : 중앙정부의 금융관리 기능 수행

-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을 위한 은행서비스 지원
- 중앙정부 채무 관리
- 정부 보증 및 공채 발행
- 은행에 대한 정부지원 관리
- 예금보험 및 투자자보호제도에 대한 관리

< 주요 기능 >



□ 기능별 세부내용

○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을 위한 은행서비스 지원

- 중앙정부 당국의 지불요구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 제공
- 사회보장제도에 필요한 자금을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
- 정부와 국회에서 결정한 국가예산을 공공기관에 지출
- 당국의 순지불액은 일일 기준으로 대여 및 투자에 대한 지침 역할
- 예금과 대출금을 통해 당국의 예산책정 조절 요청

○ 중앙정부 채무 관리

- 정부재정이 세입보다 지출이 더 많을 경우 예산적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 실행 → 이는 정부의 부채수준 증가, 예산흑자 시 융자를 상환하여 부채 감소
- 만기 도래한 장기대출 상환에 대한 자금 지원
- 정부 부채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고채와 단기증권 매매
- 부채에 대해 큰 리스크 없이 가능한 낮은 이자비용으로 지급

○ 정부 보증 및 공채 발행

< 정부 보증 >

- 스웨덴 정부 보증제도는 EU의 가이드라인을 적용 받음
- 정부 보증한도는 150억 유로로서 GNP의 50% 수준 → 은행과 기금에 보증
- 단기 9개월 ~ 장기 5년까지 보증
- 보증수수료
 - 1년 미만은 0.5%,
 - 1년 이상은 0.5%의 수수료와 0.25%의 유가증권 매입
- 보증 조건으로 임직원 보너스 등 제한

< 공채 발행 >

- 공채는 대부분 금융위기를 맞은 은행에 대해 발행
- 은행과 협정을 통해 월급 및 상여금 제한
- 상환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지원 사례로는 카네기은행이 있으며, 정부에서 인수하여 정상화시킨 후 민간은행으로 환원함

○ 은행에 대한 정부지원 관리

- 스웨덴은 발트해 연안 은행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동 은행의 위기로 인해 2008년도에 은행지원에 대한 새로운 법률 제정
- 금융시장을 분산시키는 정책 시작
- 은행지원 목적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 은행리스크 전체를 담당하며, 금융위기 시는 우량은행도 보증서, 대출, 자본출자 형태로 지원 받음
- 상환기간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정부에서 보증
-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정도의 극단적 상황에서는 파산에 직면하는 은행 인수

○ 예금보험 및 투자자보호제도에 대한 관리

< 예금보증부서 >

- 스웨덴은 1996.1월에 예금보험제도를, 1999.5월에 투자자보호제도를 도입하였고, 2007년까지 예금보증부가 담당
- 담당 기관이 작아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책임구분이 뚜렷하지 않아 2008년부터 국가채무청이 예금보험과 투자자보호를 함께 담당
- 현재 12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고 변호사, 회계감사도 있음
- 은행위기 시는 영업정지를 담당하는 별도 직원을 구성함
- 은행, 투자회사 등이 파산했을 경우 감사부의 지시에 의해 보상비 지급
- 예금자보호기금 이내에서 지원

< 예금보험제도 운영 >

-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은 중앙정부의 보증 관할 하에 있는 은행 및 타 금융기관으로 154개가 있음
- 대출전문기관을 제외한 111개 여수신은행만이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
- 총예금보험료는 부보예금의 0.1%로 법으로 정하고 있음
 - '09년말 기준 총부보예금 8,860억 SEK, 총보험료 886백만 SEK
 - 금융기관별 보험료는 총자본에 따라 다름
 - 최저 0.06% ~ 최고 0.14%
 - 보험료는 재정 및 행정서비스 기관(FASA)이 운영하는 안정적인 투자기금에 예치

- '09년말 현재 총자산은 210억 SEK
- 스웨덴의 예금보호 최고한도는 500,000 SEK(50,000 EUR상당)
 - 예금지급 사례는 1996년, 2006년에 소규모 은행 영업정지 시 각 1번씩 있었음
- 현재 기금적립률은 제한이 없지만 앞으로 GNP와 연계하여 법으로 정할 것 같음

< 투자자보호제도 운영 >

- 보상 비용은 손실의 범위가 결정된 후 지불
- 보상에 대한 부과 보험료의 세부적인 규정은 없음
- 보상 이후 보험료 결정방법에 대해 검토

4. 국가채무청의 내용 요약

☐ 전문 공공기관을 위한 통합 은행서비스 지원시스템 확립

- 스웨덴은 전문 공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채무청이 공공기관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에 필요한 자금 등 국가예산을 일괄 지출하고 있음
 - 국가예산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자금흐름 투명화에 기여

☐ 은행에 대한 보증 확대 등 정부지원 강화

- 스웨덴은 GNP의 50%까지 은행과 기금에 보증함으로써 선제적으로 금융시장 안정 도모

- 금융위기 시는 우량은행에 대해서도 상환기간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정부에서 보증

□ 예금보험료는 금융기관의 총자본에 따라 차등 부과

- 총예금보험료는 부보예금의 0.1%로 정하고 있으며,
금융기관별 보험료는 총자본에 따라 최저 0.06% ~ 최고 0.14%로 차등 부과
- 현재 목표기금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GNP와 연계하여 동 제도를 도입할 예정

III. 노르웨이 금융감독청(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연수내용

1. 연수개요

- 연수일자 : '10. 6. 18(금)
- 주요내용

설명자	시간	주요내용
해외협력국장 Nina Moss	09:30 ~ 10:30	금융감독청의 조직,기능
회계감사부 Martin G. Halvorsen	10:40 ~ 11:30	금융감독 및 절차
금융보험부 Kjell Aasgaarden	11:40 ~ 12:30	은행, 보험 위기관리

2. 금융감독청의 조직

가. 설립

- 1900년 저축은행감독관과 보험감독위원회 설립
- 1918년 증권중매인통제기구 설립
- 1924년 은행감독청 설립 : 상업은행 및 저축은행 공동 감독
- 1986년 은행·보험·증권에 대한 세계 최초 통합감독기구(Kredittilsynet:Banking, Insurance, and Securities Commission) 창설
- 2009년 Kredittilsynet에서 Finanstilsynet으로 명칭 변경

나. 목적

-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을 통해 금융안정 및 시장기능 제고
 - 경제적 여건 및 예금자와 투자자 보호가 바탕
 - 금융안정 및 시장기능은 경제성장과 고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복지수준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필수요건
- 다음의 여섯 가지 과제를 통해 목적 실현
 - 올바른 경영과 우수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를 갖춘 건전한 금융기관 육성
 - 만족스러운 지불을 보증하는 튼튼한 인프라 구축
 - 가계, 기업, 부동산 및 증권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리스크 모니터링
 - 금융시장 투자자와 수요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 및 상장회사에 대한 양질의 금융실적 보고

- 금융시장 참가자의 규정준수 촉진 및 금융시장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 규제
- 위험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위기관리 철저

다. 감독 대상기관 및 감독권

□ 감독 대상기관

- 은행, 파인애플회사, 보험회사, 보험중개업자, 연금기금, 모기지회사, 투자회사, 투자기금관리회사, 증권거래소, 부동산업자, 회계감사회사 등 포괄적 감독

□ 감독권

- 감독권은 기본적으로 금융감독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규정반포권을 가지며 재무부 대신 법률 및 규정의 초안을 작성하고 법률이 재무부에 배정한 일부 권한은 재무부의 공식 위임서신을 통해 금융감독청에 위임
 - 은행을 포함한 금융부문의 인허가 대부분에 관하여 예비조사를 수행한 후 최종 인가권자인 재무부에 권고하고 증권기업, 보험중매인, 연금기금 등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청 자신이 최종 인허가권을 보유
 - 주요 금융중개기관의 인가 취소를 재무부에게 권고할 수 있으나 최종결정권은 재무부가 보유
 - 이사 및 감사의 면직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영자나 이사를 거부할 수 있음
 -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징구권을 가지며 현장검사권을 독점하고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개별지시권과 금융부문 일부에 대한 일반지시권을 보유

- 개별 금융기관에 주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일부 기관에게는 금융감독청이 직접 영업정지권을 발동할 수 있고,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재무부에게 영업정지를 권고할 수 있음
- 또한 금융기관에게 계약이전을 명령하거나 이를 재무부에 권고할 수 있음

라. 경영 및 조직

□ 경영진

- 경영은 국왕이 임명하는 금융감독청장이 담당. 임기는 6년
 - 카운셀링, 커뮤니케이션 담당 팀 등이 업무를 보좌
-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약 200명의 전문가를 채용
 - 변호사, 경제학자, 회계감사, 사회과학자 등
- 감독청의 비용은 피감독기관에서 부담

□ 감독조직 원리

- 통합금융감독기구 내에 두 개의 대(大) 업무로 구분
 - 본질적 감독(금융안정) : 법적인가, 현장검사, 거시경제 감시, 은행감독, 보험감독, 리스크모형(바젤2)
 - 기업·시장 감시(시장기능) : 투자회사, 증권거래소, 인프라, 시장남용, 부동산업자

□ 내부조직

- 금융보험부, 자본시장부, 회계감사부, 행정지원부 등 4개 부서로 구성
- 금융보험부는 은행, 파이낸스회사, 보험회사, 모기지회사 등을 관장
 - 이들에 대한 감독은 인가 및 법규 관련 업무, 상시검사 및 분석 업무, 현장검사업무 등 감독활동의 각 유형별로 통합 편제
- 자본시장부는 증권시장과 투자기금, 증권회사, 부동산업자 및 증권중매인, 부채회수기업 등을 관장
 - 현장검사와 상시검사는 팀 단위로 이루어짐

□ 인원 : 25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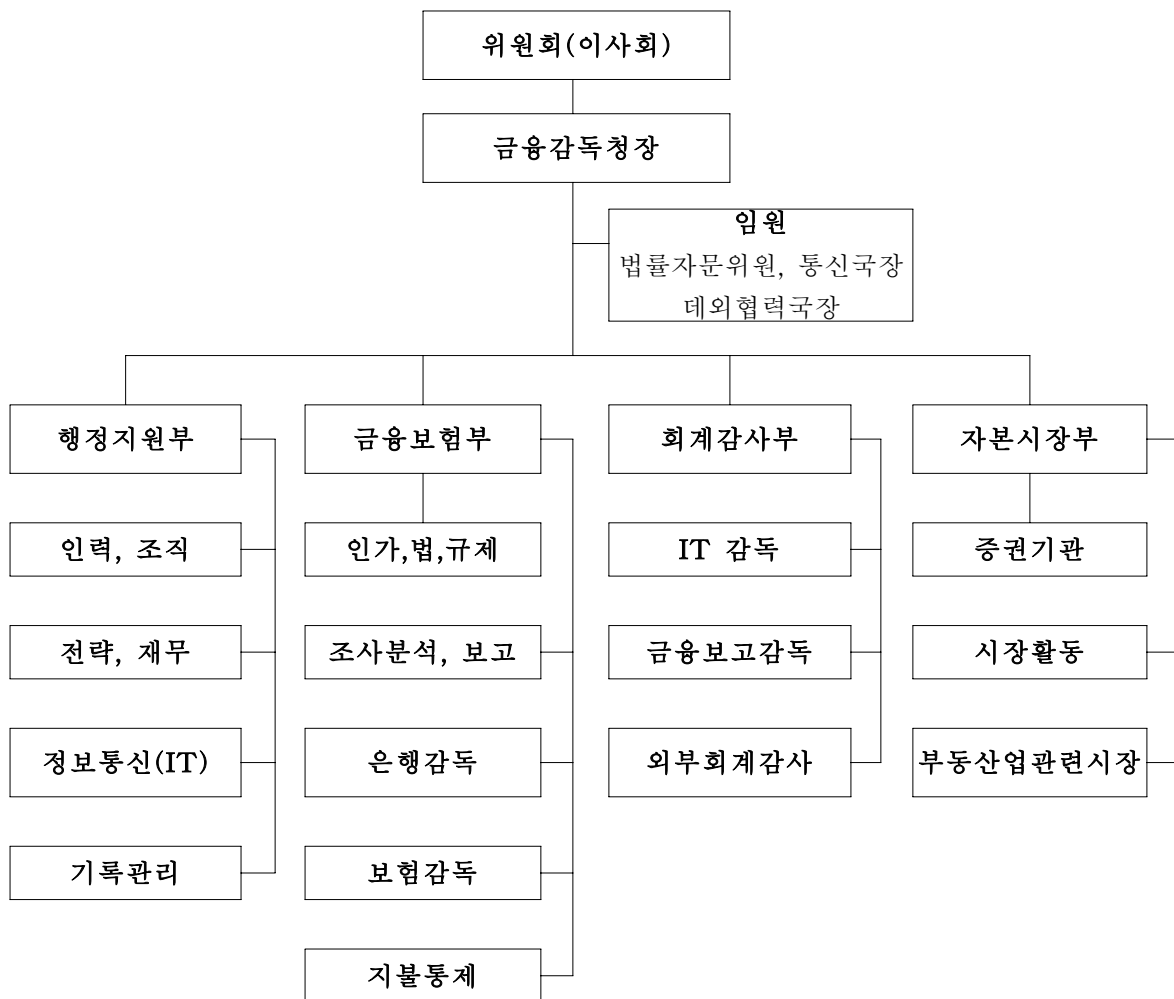
- 여성이 52%, 고학력자가 87%, 감독팀의 5년 이상 경력자가 25%

□ 위원회

- 위원회는 금융감독청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금융감독청은 재무부장관(국왕 위임)이 임명하는 위원회에 책임을 짐
 - 위원회는 임기 4년의 독립위원(현직 각료나 정치인이 아닌, 학계나 피감독산업 또는 공무원 출신의 위원) 5인으로 구성

- 행정적인 문제가 다루어지는 경우 2명의 직원대표가 참석
-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무부장관이 지명
- 월 1회 회합하는 위원회에 금융감독청장, 부서장, 관련 직원이 참여하여 의제를 논의할 수 있음
- 위원회의 모든 회의 자료는 금융감독청장 책임 하에 작성
- 금융감독청장은 재무부의 감독관련 지시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음
- 금융감독청의 예산은 재무부가 승인하지만, 감독계획은 매년 위원회가 승인, 결국 위원회는 금융감독청과 재무부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수행하며 금융감독청을 정치적 관료적 압력에서 격리시키는데 기여

<금융감독청 조직도>



3. 금융감독 및 절차

○ 리스크감독 원리에 근거한 검사

-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우선 검사
 - 매년 총리스크 분석
 - 금융보고서 및 계획에 관한 관리를 위한 회합
 - 매년 검사프로그램 수립 및 1회 이상 검사 실시
 - 검사자는 검사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금융기관 감시
- 고위험 징후 금융기관에 대한 우선 검사
 - 금융계측 및 조기경보시스템 수행

○ 검사 준비

- 검사는 바젤2 등과 유사한 투명한 리스크모형에 근거 실시
- 유능한 검사자 2 ~ 3명이 팀을 구성
- 검사는 확립된 절차, 방법, 기준에 의거 실시
- 최고경영진, 이사회와 구두 내지 서면을 통한 대화

○ 검사 절차

- 체계적인 기준자료에 근거하여 위원회에 보고
-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 요청 : 분석과 질문
- 현장검사 : 회장, 상임이사, 감사 등과 대화
- 위원회에 보고
- 위원회 의견 청취
- 검사결과 최종 보고(공개 원칙, 중요사항은 비공개)

○ 감독리스크 모형

-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보험리스크, 운영리스크 등 5개의 내부통제 모형이 있음
- 각 모형은 2개 부분으로 구분 : 리스크관리와 시장노출 부분
- 국제모범경영기준과 자체 경험에 근거하여 마련
- 노르웨이뱅크의 Sebra 모형을 벤치마킹하여 신용리스크 분석

○ 현장검사 조치

- 임직원과 대화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옴
- 최종보고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조치에 효과적임
- 보고서에는 정책, 과정, 시장노출, 리스크관리에 대한 권고를 포함
- 위원회에 참석하여 금융기관을 지도할 권리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음
- 금융기관에 대해 일정 자본비율 유지, 위험포트폴리오 제한, 리스크관리 강화 지시
- 위원회의 의결 및 심의를 위한 권고는 충분히 조치되고 있음

○ 위반 시 조치

- 검사기간 법률과 규정 위반 적발 시 현장에서 조치
- 예비보고서 작성 시 금융기관이 제한시간 내에 준수토록 확인
- 은행은 보통 즉각적으로 실행

- 불이행 시 공식 경고 및 벌금 부과
- 형사혐의의 범죄행위는 경찰에 신고

○ 상시검사 조치

- 상시검사 시 법률과 규정 위반 발견
 - 자본의 25%를 초과한 대량 외부투자
 - 주식이나 부동산의 과다 보유
 - 자본적정성의 문제
 - 유동리스크 노출
- 통상 구두나 서면으로 주의를 주고 제한시간 내에 시정하도록 요구
- 불이행 시 현장검사 등 강력한 조치 실행

4. 은행 및 보험의 위기관리

- 금융기관의 지불능력 해결의 어려움에 항시 주목
 - 금융기관은 이행기한 내에 불이행 가능성 상존
 - 기금안정성, 자본적정성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 불충족
 - 금융기관을 위협할 정도의 경제환경의 불확실
- 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요구를 명확히 하고 중앙은행과 협의 추진
- 금융기관의 시정요구에 대한 불이행 시 총회 소집, 이사회 교체, 강력한 이행사항 부과 등 요구
- 다른 감독기관과 협력
 - 북유럽 국가와 MOU 체결
 - 대형 북유럽 금융기관 그룹과 특정 MOU 체결

- 발트해 연안 국가와 MOU 체결
- 금융기관의 지불능력이 악화되었을 경우 재무부, 예금보험부, 보증기금에 즉시 보고
 - 예금보험부와 보증기금은 해당 금융기관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금융기반을 확립했는지 확인
 - 금융기관이 지불능력이 없고 적절한 금융기반을 갖추지 못할 경우 재무부장관(국왕 위임)은 공적관리 명령
- 실무 준비사항
 - 부청장은 전반적인 위기관리팀을 구성
 - 금융보험부의 최고 자문담당자는 사무기능 수행
 - 모든 직원은 위기 조정자에게 중요한 문제를 지적
 - 외국 정부를 포함하여 외부기관의 포함 여부 확인
 - 모범사례가 될 만한 적당한 자료가 있는지 파악

5. 감독 관련기관 간 협력

- 금융감독청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금융시스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임
- 금융감독청과 금융안정 책무를 가진 중앙은행 간 협력 및 조정은 효과적 감독을 위한 핵심요소
- 금융감독청은 중앙은행과 긴밀하게 협력
 - 1993년에는 중앙은행과 정보교환 및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식 지침이 체결
 - 1994년부터는 두 기관의 협력 하에 거시경제 감시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이 프로그램 하에서 두 기구는 일 년에 각 2회씩 금융부문의 경제·재무상황 및 전망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
 - 금융건전성의 지표를 감시하는 것 외에도 거시경제의 변화가 금융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여 재무부에 보고
- 위원장, 금융감독청장, 중앙은행총재는 분기별로 만나 금융안정과 금융시장의 구조변화, 국제적 동향 등에 관련된 이슈를 분기회의에서 논의
- 금융감독청과 중앙은행의 관련 부서나 직원 간에도 인가신청이나 구조적 이슈 등 사안에 대해 매월 접촉
 - 위원장, 금융감독청장, 재무부 수석국장도 분기별로 회합

6. 금융감독청의 내용 요약

- 내부조직을 감독기능 원리에 따라 구분하고 리스크감독 원리에 근거하여 검사
- 금융안정을 위한 본질적 감독과 기업·시장을 감시하는 기능으로 구분하여 조직 편제
- 금융안정 감독 : 거시경제 감시, 현장검사, 리스크모형 분석 등
 - 시장기능 감시 : 투자회사, 시장남용, 부동산 거래 등
- 대형 금융기관 및 고위험 징후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검사 실시
- 총 리스크 분석 및 조기경보시스템 상시 실행
 - 감독리스크 모형은 크게 리스크관리와 시장분석으로 구분하고, 국제모범경영기준 및 각국 선진은행의 모형을 활용

□ 위원회와 금융감독청 간의 의사교류 활발

- 위원회에 감독청장, 부서장, 실무직원이 참여하여 의제 논의 가능
- 행정에 관한 문제 논의 시 직원대표가 참석하여 의결·심의
- 현장검사 시 위원회와 협의하여 관련 내용을 결정하고 최종결과 보고 전에 위원회의 의견 반영

□ 현장검사를 중요시하고 검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 현장검사 시 임직원과 대화를 통해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개선조치의 실효성을 제고

□ 은행의 위기관리를 위해 감독 관련기관과 협력 강화

- 감독청의 주요기능은 금융시스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음
- 이를 위해 북유럽 등 각국 감독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노르웨이 중앙은행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
 - 위원장, 금융감독청장, 중앙은행총재는 금융시장 변화, 국제적 동향 등에 관련된 사안을 분기회의에서 논의
 - 금융감독청과 중앙은행의 관련 부서의 직원 간에도 매월 회합.